

노인학대 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의료인, 119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대상 교육교재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인 이기민

편집인 이현민, 이해영, 김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9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본 교육교재는 사회적기업 청밀 과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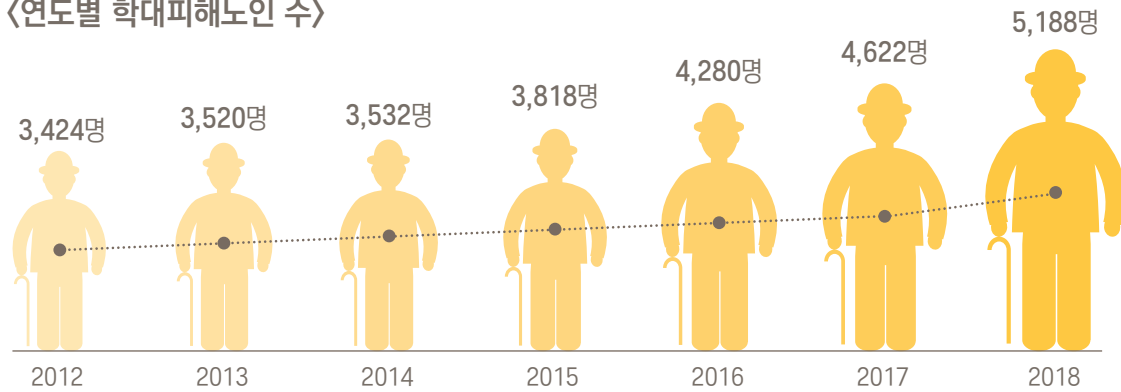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

01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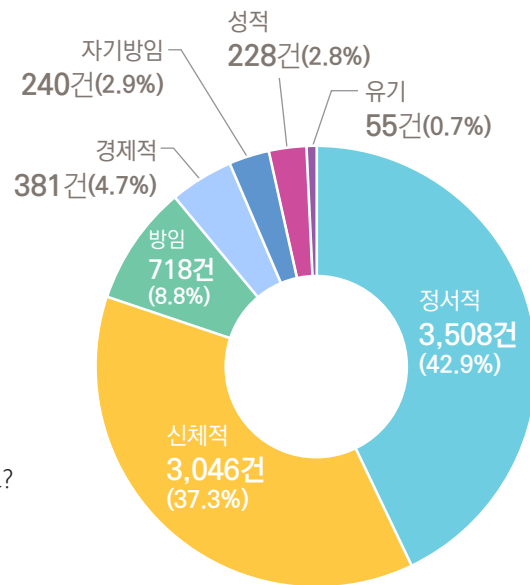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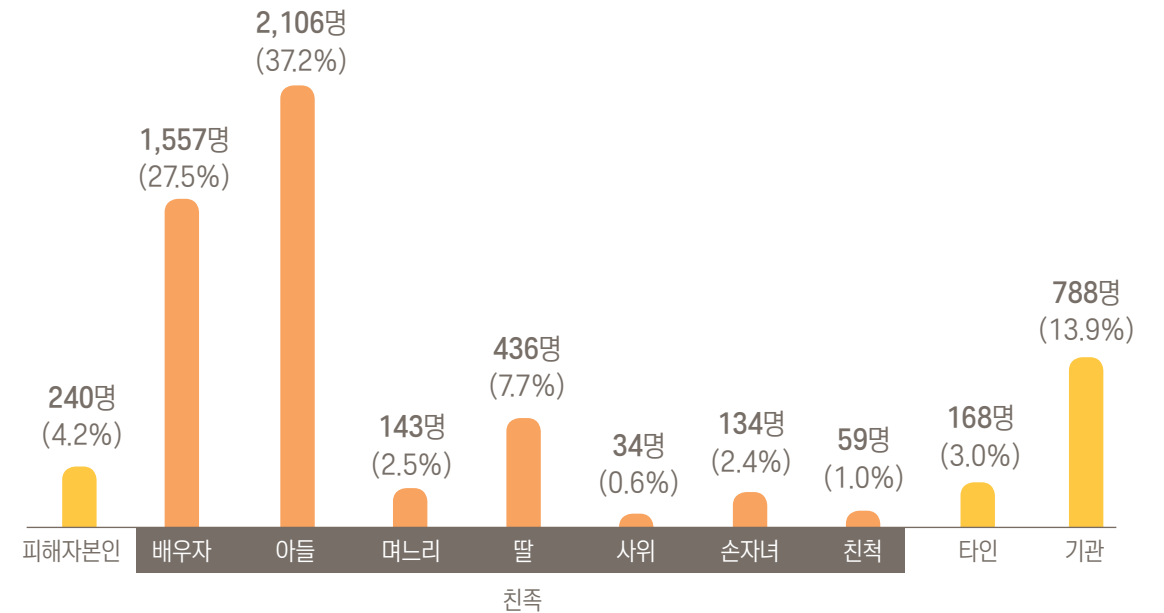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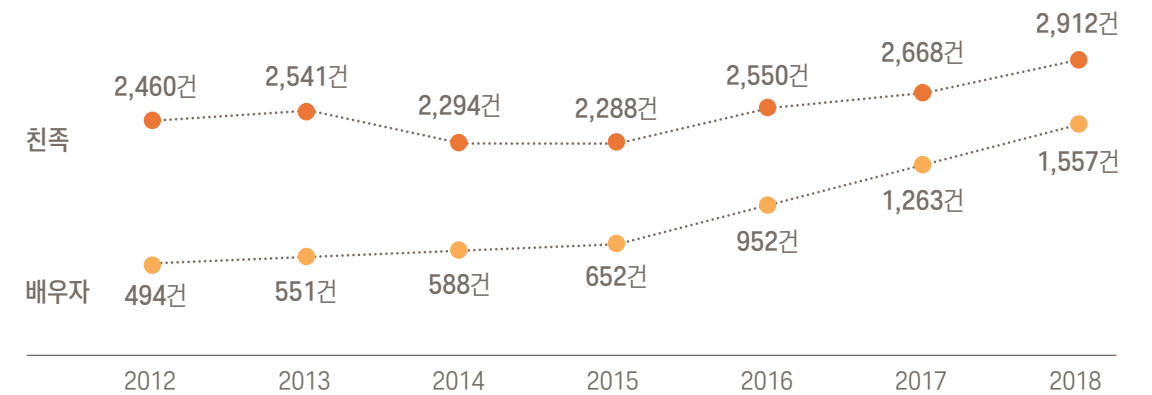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2018년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총 5,665명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한 학대의 증가 추이〉



※ 해당 데이터의 친족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을 포함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2 나는 신고의무자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기동,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장치·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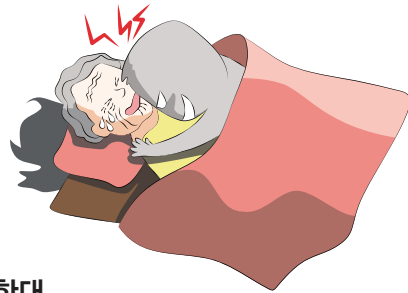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헐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예측징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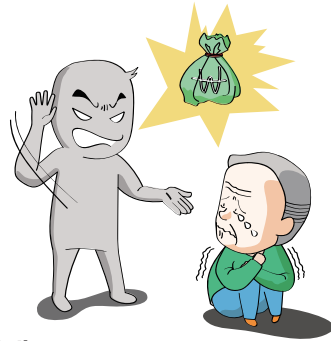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에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웜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동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묵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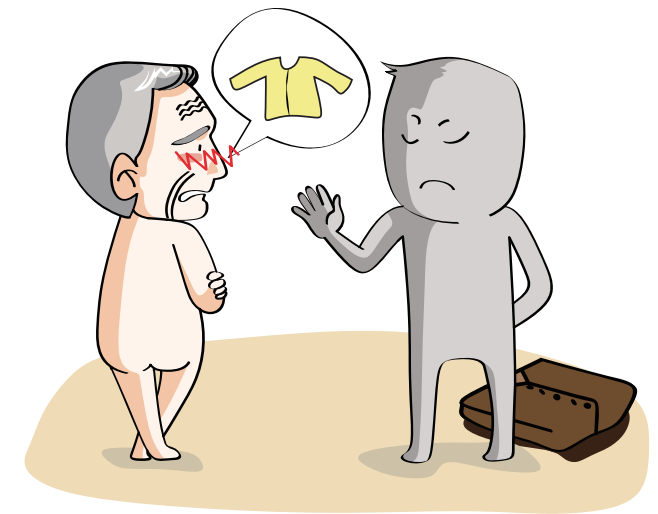
예측징후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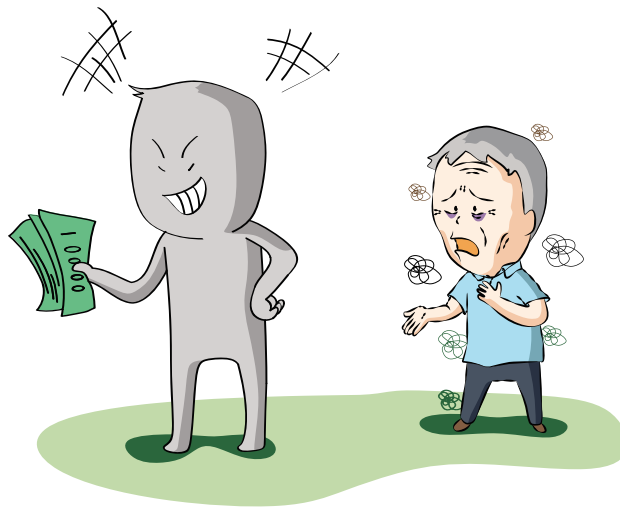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에 걸림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챌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주변 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 노인 스스로 의료적 처치, 의식주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험함(자기방임)

05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사례

70대의 노인이 동거 중인 아들에 의해 머리를 다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료인은 치료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에 남아 있는 장·단기적 폭행 흔적과 정황을 확인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하였다.

의료인의 신고를 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해당 병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신고자와 학대피해노인을 상담한 후 학대피해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였다.

추후 상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행위자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다른 자녀들과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자녀들이 가족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부양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학대피해노인이 병원 퇴원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으므로 상담원은 가족 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정서적 지지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주민센터, 병원 사회사업실 등의 연계를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알코올 문제를 보이는 아들은 중독치료 및 학대행위자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후 병원에서 건강하게 퇴원한 학대피해노인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며, 재학대 예방을 위해 상담원을 비롯한 이웃과 다른 자녀들이 주기적으로 전화와 방문을 지속한 결과,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확보가 확인됨에 따라 사례를 종결하였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01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04

02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5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 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6

06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학대 관련정보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노인으로서의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미를 갖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07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Q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결과 제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의료기관 및 의료업무 관련 신고의무자용 노인학대 선별도구 1)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및 응급구조 현장에서 발견 시)

본 선별도구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8가지 중 1개의 항목에서라도 학대가 의심이 되면 노인학대에 대한 진료 절차를 진행하고 1577-1389로 전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항목분류	내용	체크
병력청취	1 환자가 발병 후 혹은 수상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늦게 왔는가?	
	2 보호자와 환자에게 병력을 물었을 때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진술이 바뀌는가?	
환자의 병력	3 환자의 손상병력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신체검진 소견이 있는가?	
환자의 나이 고려	4 환자의 평소 활동상태를 고려할 때 발생하기 힘든 상황으로 다쳤다고 판단되는가?	
	5 손상 부위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아닌가?	
신체검사 소견	6 환자의 신체검진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는가?	
	7 환자의 수상 원인으로 가족/보호자/간병인으로 진술하거나 의심되는가?	
관계에 대한 포괄적 느낌	8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노인학대가 의심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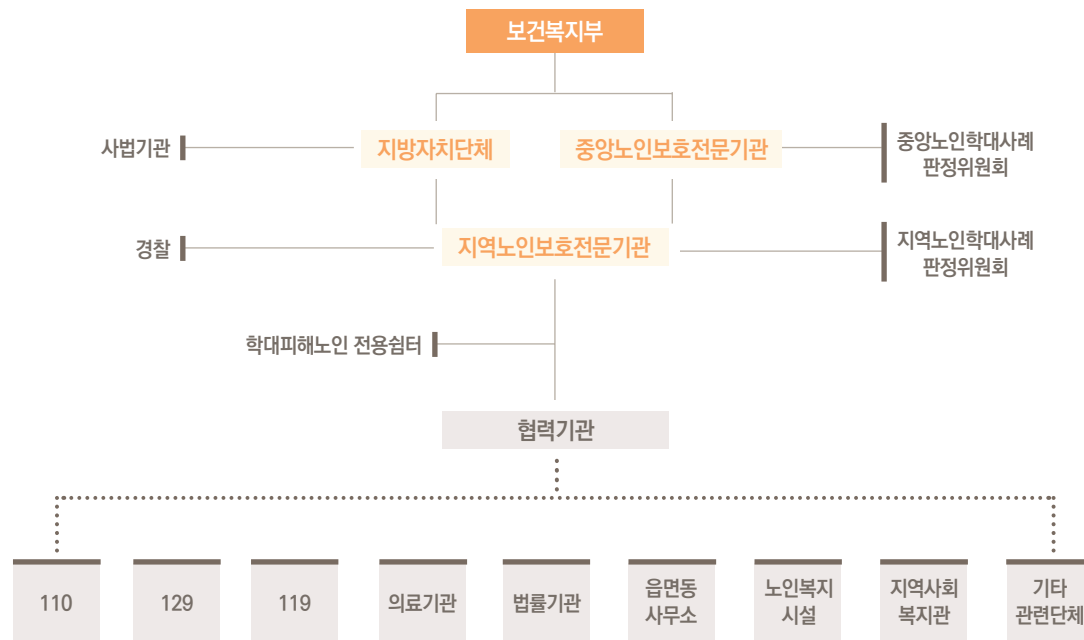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대한소아응급의학회(2014).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선별도구 개발.

08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홍보

홍보사업

- 이동상담 실시, 언론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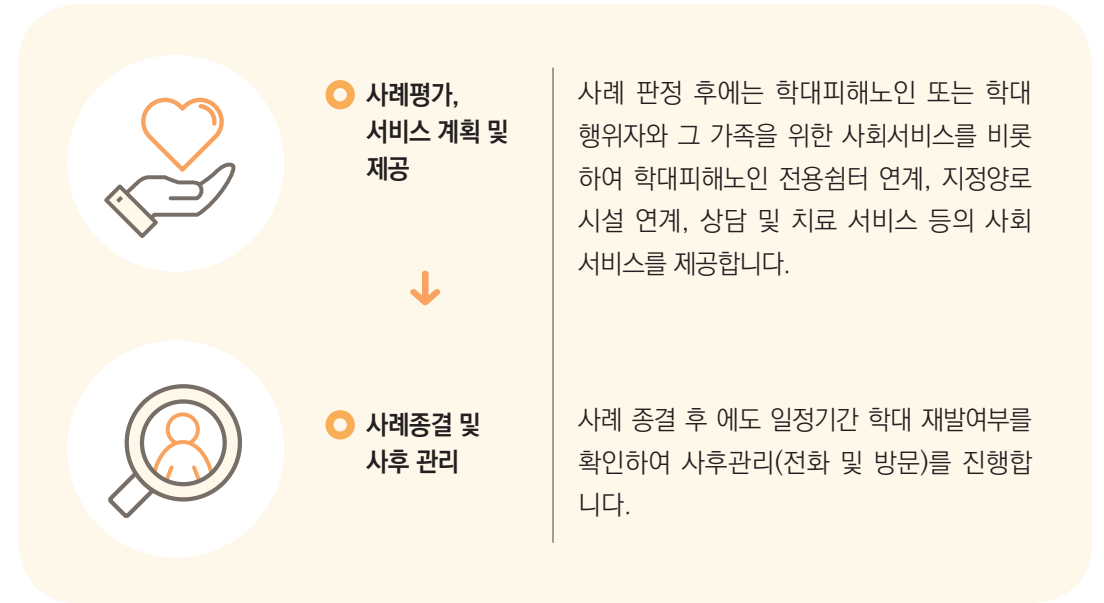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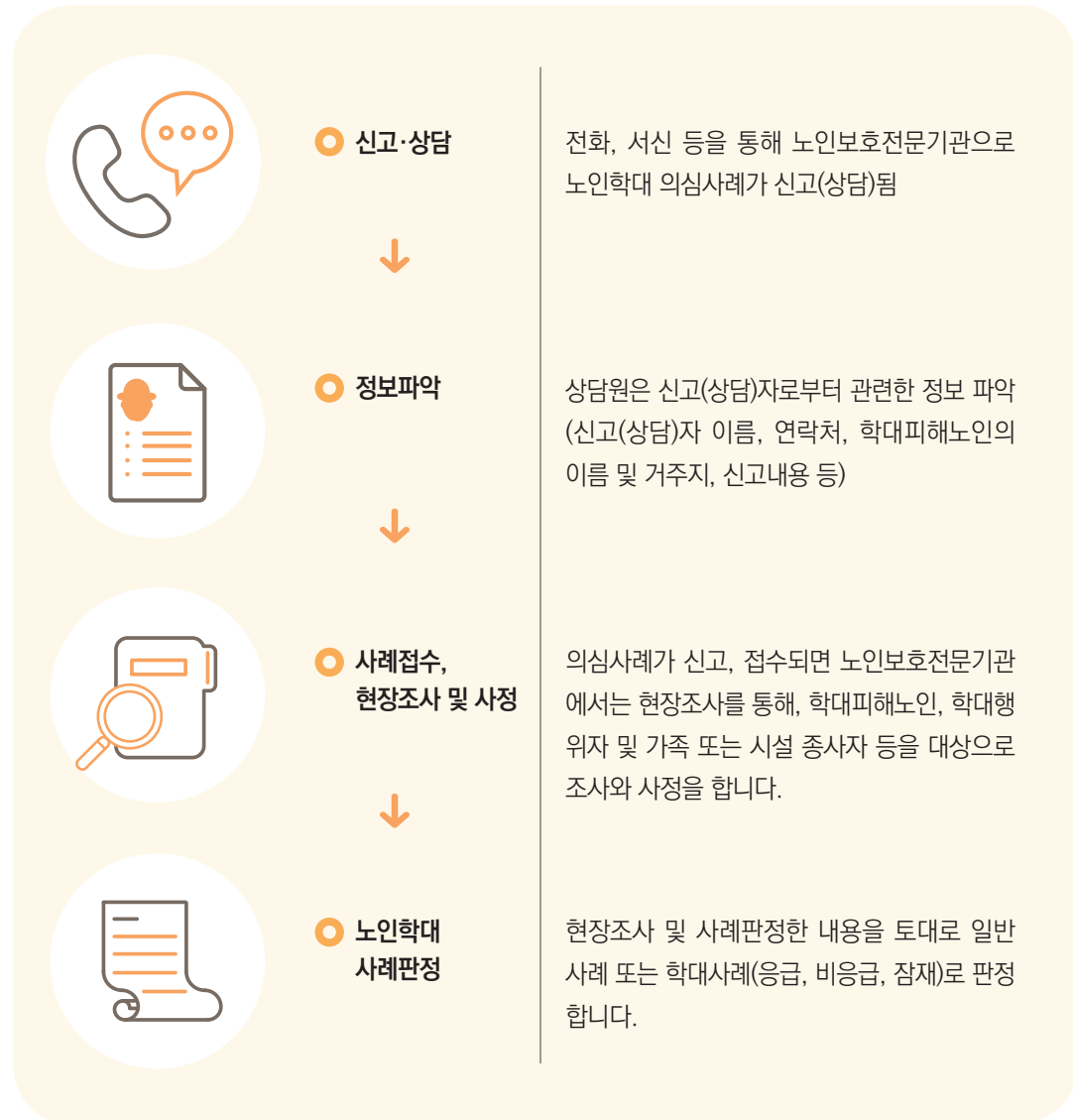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 개선사업
- 효행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7쪽 참고)

0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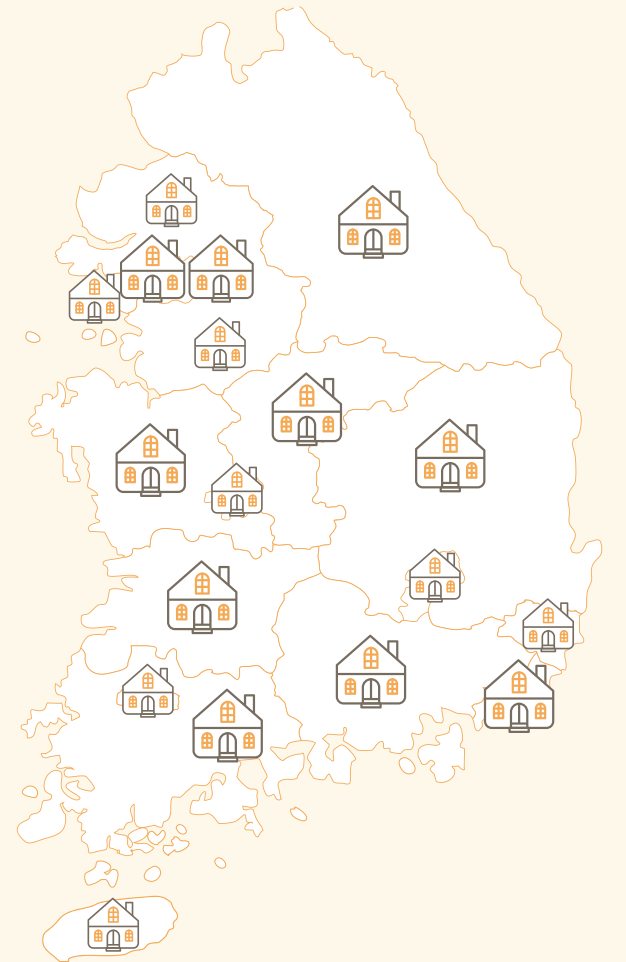
서비스내용

-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③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④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벌칙 제55조의4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벌칙 제57조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7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과태료 제61조의2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19. 10. 기준)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앙		-	02)3667-1389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02)921-1389
부산	서울서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2)3157-6389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대구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남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053)472-1389
인천	대구북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053)357-1389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26-8792
광주	인천서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69-0533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42)472-1389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032)683-1389
강원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268-1389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충북	강원동부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033)655-1389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
충남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
	충남*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041)534-1389
전북	충남남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041)734-1389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063)273-1389
전남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443-1389
	전남동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경북	전남서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나주시	061)281-2391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북부*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예천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054)655-1389
경남	경북서남부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054)436-1390
	경남*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055)222-1389
제주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센터 운영